

원주 무실~만종 서부순환도로 공사 개찰

마지막 '최저가 낙찰제' 물량 22일 집행

지난 15년간 추정가액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된 최저가 낙찰제가 원주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 개찰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오는 22일 최저가 낙찰제의 마지막 물량인 원주시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공사에 대한 개찰을 집행한다. 이 공사를 마지막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종합심사낙찰

가 대형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조달청은 지난 2월 가장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의 세부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공사를 발주했다. 또 종합심사평가제 시행이 5월까지 유예됨에 따라 당분간 지자체·지방공기업 수요의 공사는 모두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

제는 부실시공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찰제도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총 838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문막에서 원주 도심으로 진입하는 국도 42호선의 교통 해소와 함께 원주 기업도시와 연결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위윤기자

강원 건설업계 '고난의 계절' 오나

대형공사 발주 마무리 단계 민간 주택시장도 위축 우려 지난해 회복세 유지 못할 듯

지난해 올림픽시설공사 등 발주물량이 늘어나면서 다소 개선됐던 강원지역 건설경기가 올해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공사 발주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민간 주택시장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회원사들의 건설 수주액과 기성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31.78%와 16.92%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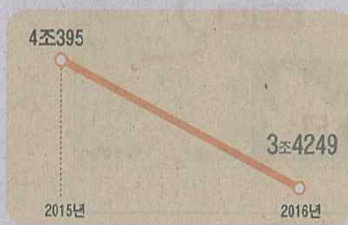
건설 계약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2000억원보다 늘어났다. 기성액도 2조3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대형공사들의 발주가 이어졌고, 지난해 주택경기 호조로 도내 회원사의 분양 실적도 좋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강원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공사 규모는 4조395억원으로 4조원 이상의 신규발주를 기록했고, 도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도 1만8868가구로 2009~2014년 연평균 1만2128가구보다 56% 증가했다.

건설계약액·기성액 추이 (단위: 억원)



올해 공공공사 발주금액 (단위: 억원)



특히 건축의 경우 지난해 신규 수주액과 기성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60%와 35% 급등했다.

하지만 강원 건설업계는 올해 건설경기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일단 평창올림픽 시설공사가 일부 도

로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발주가 됐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내 공공발주 공사는 3조424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주택시장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심사 강화로 침체가 예상된다. 당장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012년 590만원에서 지난해 716만원으로 연평균 6.7%나 상승해 수요 위축 우려가 있는 가운데, 오는 5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규정 강화가 지방에서 적용된다.

건협 강원도회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관련 발주와 일부 주택업체의 실적을 제외하면 지난해에도 시장 환경이 크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올해 발주 예상 물량 등을 고려하면 신규 수주고는 지난해보다 3%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건협 강원도회 회원사 613개 업체 가운데 단 한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64개 업체로 전체의 10% 정도가 신규 수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협 강원도회는 "올해 신규 발주가 줄어들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확대

발주처 또 다른 ‘甲질 수단’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가 이르면 이달 중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확대를 협의회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이 발주기관의 또 다른 ‘갑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3면

공정위, 추진협의회 이달중 가동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상 근거 미비 업계 “행정부담 전가 횡포 불보듯”

17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도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20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등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완료했다.

이달 중 협의회 활동이 개시되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확대와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최대 역점 추진과제”라면서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벌였고 조만간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구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협의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대위변제, 행정부담 전가 등 ‘갑질’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품질과 공사기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상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지방계약법에 담겨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규정과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은 얘기가 다르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가·지방계약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법 위반 이후 1년 이내에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발주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입찰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촉구하고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이 확대 적용되면 수급사업자의 대금 체불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대위변제 요구, 하도급대금 지급 업무 등 발주기관의 행정부담 전가와 같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발주기관(갑)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도급대금 직불로 인한 공사관리의 어려움도 불보듯 뻔해 시공 품질 저하와 공기 지연 등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로 하도급대금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하도급사 부도' 관리 어려운 발주처, 원사업자에 피해 떠넘길수도

대금체불 사태 등 발생 땐 추가인력·비용 투입 불가피 우월적 지위로 업무 전가

대금지급 권한 사라지는 원사업자 공정관리 차질 工期지연·품질 저하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하도급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공사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뒤 발주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은 작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상 체계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라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선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원사업자가 수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공사관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 확인·관리 업무 등이 발주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수급사업자가 부도 체디를 경우이다.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현장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 등에 대한 대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발주기관은 자재·장비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현장의 기성 상황, 자재납품 상태, 장비사용 실태,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을 확인, 처리하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과 비용 낭비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원사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은 시공 품질과 공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권한은 공사관리 조정 수단 역할을 하는데, 하도급대금 지급 권한이 발주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공사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전체 공기가 공종과 관계 없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수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 품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을 선불리 확대하기보다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발주기관의 직불 범위를 자재·장비업체는 물론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부담 전가 금지, 부당한 대위변제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간섭을 막기 위한 장치들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경남기자@mp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보호장치가 없다

1차→2·3차 협력사간 하도급대금 체불 더 심각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의 또 다른 맹점은 건설산업의 생산·공용구 조상 하위 부분에 있는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부도 발생 여부를 수시 체크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수급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대금 체불 상황을 파악하고 대위변제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게 되면 발주기관이 자재·장비대금은 물론 인건비까지도 직접 확인, 지급해야 하는데 발주기관이 이들 업무를 전부 챙기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어서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들은 최

악의 경우 생존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의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들조차 수급사업자의 잦은 부도와 대금 사고를 우려해 원사업자와의 거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대금 체불이 원사업자와 1차 수급사업자의 거래가 아닌 1차 수급사업자와 2차 이하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의 한계다.

1차 수급사업자의 경우 원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데다 경영상태가 불안한 탓에 자금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한 이후 수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는 물론 원

사업자 보호 장치도 마땅치 않다. 만에 하나, 발주기관의 감질로 인해 원사업자가 공기 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위변제를 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어렵다. 계약이행보증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보상 방식이 실손보상으로 대위변제액이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못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이중 지급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을 통한 발주기관의 직불은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뿐 아니라 원사업자까지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확대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